

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		
총	무	과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8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반영
- 나. 민선9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,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조정
- 다.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(한시기구) 신설에 따른 한시정원 책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: 1,890명 → 1,945명(증 55) (안 제2조)
 - 1) 집행기관의 정원 : 1,841명 → 1,894명(증 53)
 - 2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49명 → 51명(증 2)
- 나. 정원관리기관 중 출장소 삭제 (안 제4조)
- 다.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 (안 별표 3)
 - 1) 정원 총계 : 1,890명 → 1,945명(증 55)
 - 2) 일반직 계 : 1,846명 → 1,899명(증 53)
 - 가) 4급 계 : 13명 → 14명(증 본청 2 / 감 출장소 1)
 - 나) 5급 계 : 97명 → 99명(증 본청 6, 직속기관 2 / 감 출장소 6)
 - 다) 6급이하 소계 : 1,731명 → 1,781명(증 50)
 - 3) 연구직 계 : 8명 → 11명(증 3)

가) 연구관 : 변동없음

나) 연구사 : 8명 → 11명(증 3)

4) 지도직 계 : 34명 → 33명(감 1)

가) 지도관 : 변동없음

나) 지도사 : 31명 → 30명(감 1)

라. 한시 정원표 (안 별표 4)

1) 골목상권지원단(4급) : 신설(존속기한 : 2029. 6. 30.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
제28조, 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890명”을 “1,94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841명”을 “1,894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49명”을 “5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직속기관, 출장소”를 “직속기관”으로 한다.

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한시정원의 존속기한) 이 조례에 따라 증원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3]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945	1,945				
정무직 계	1	1				
시장	1	1				
일반직 계	1,899	1,899				
3급	1	1				
4급	14	11	1	1	1	
5급	99	53	3	7	11	25
6급이하 소계	1,781	1,781				
전문경력관 소계	4	4				
별정직 계	1	1				
5급 상당	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11	11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11	11				
지도직 계	33	33				
지도관	3			3		
지도사	30	30				

■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[별표 4]

한시 정원표(제6조 관련)

기 관 별	정 원		존속기한	비 고
	계	내 역		
골목상권지원단	1	일반직 : 4급 1	2029.6.30.	골목상권지원단장
문화산단추진단	1	일반직 : 5급 1	2027.6.30.	문화산단추진단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1,890명</u> 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841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49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945명</u> -----. 1. ----- <u>1,894명</u> 2. ----- <u>51명</u>
제4조(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국, <u>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, 읍 · 면 · 동</u>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4조(정원관리기관별 · 직급별 정원) ----- <u>직속기관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8조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생략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삭제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"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③ ~ ⑤ 생략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- 민선9기 역점시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,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총 55명을 증원함으로써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정원 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단가와 '26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.5%를 적용하여 추계함
- 나. 비용추계기간은 조례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으로 추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으로 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정원 55명을 증원할 경우 '26년 3,090,118천원을 포함하여 '30년까지 16,570,65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
【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재정소요액】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26)	2차년도 (2027)	3차년도 (2028)	4차년도 (2029)	5차년도 (2030)	합 계
세 출	3,090,118	3,198,272	3,310,212	3,426,069	3,545,981	16,570,652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 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국 비	140,250*	—	—	—	—	—
도 비	—	—	—	—	—	—
시 비	2,949,868	3,198,272	3,310,212	3,426,069	3,545,981	16,570,652
민 간	—	—	—	—	—	—
기 타	—	—	—	—	—	—
합 계	3,090,118	3,198,272	3,310,212	3,426,069	3,545,981	16,570,652

* 20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분(국비 50%, 시비 50%)

5. 부대의견 : 없음

6. 작 성 자

- 총무과 인사팀 이미래(☎480-677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추계 대상

- 공무원 정원 증원 55명

2. 비용추계 방법

- 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55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공무원 1인당 직급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, '26년부터 '30년까지 '26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3.5%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

소 관 부 서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손 혁 영
	팀 장	김 태 식
	담 당 자	이 미 래 (480-6773)